

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24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7. 9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□ 개정이유

- 지하수의 오염 및 고갈방지와 보전관리를 위하여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와 병행하는등 지하수법이 '97.7.14일부터 대폭개정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조례로 위임한 사무의 일부를 정리하고
- 현지성 및 주민이해와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사무에 대하여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,군수,출장소장에게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민원 사무의 신속한 추진 및 행정의 능률을 향상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1. 현재 위임된 사무를 개정지하수법에 따라 조문정리
(제1항 가목 내지 타목)
2. 개정지하수법에 새로이 신설된 내용중 다음 사항을 위임함
 - 지하수개발·이용의 허가 (하목)
 - 지하수 개발에 따른 착공 및 준공신고 (거목)
 - 지하수개발·이용시설에 대한 허가의 취소 (너목)
 -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의 예치 (더목)
 - 지하수개발·이용시공업자 및 영향조사기관에 대한 감독 (러목)

□ 관계법령

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1]권한위임사무중 수질관리과소관 제1호중 가목 내지 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, 타목 다음에 하목 내지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분야별	일련 번호	사 무 명	근 거 법 령
수질관리 과	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하수와 관련한 다음 사항 가.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한 지하수의 개발·이용 및 보전·관리를 위한 조사등 나. 지하수개발·이용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다. 지하수개발·이용시설의 시정 명령 및 폐쇄명령등 라. 지하수개발·이용자 및 시공업자에 대한 청문 및 의견청취 	<p>지하수법(이하 “법”이라한다)제5조제2항 내지 제5항</p> <p>동법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제2조내지제5조</p> <p>법제8조 령제13조</p> <p>법제11조 령제17조 및 제18조</p> <p>법제35조제1호 내지 제4호 령제42조</p>

분야별	일련 번호	사 무 명	근 거 법 령
수질관리 과		<p>마. 지하수개발·이용시설에 대한 원상복구명령등</p>	<p>법제15조제2항 내지 제4항 령제23조및제24조</p>
		<p>바. 지하수 보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</p>	<p>법제13조 령제21조</p>
		<p>사. 지하수오염방지조치명령등</p>	<p>법제16조제2항 령제25조및제26조</p>
		<p>아. 지하수이용실태조사 (단, 중앙행정기관에 보고는 제외)</p>	<p>법제17조제2항 및제3항 령제28조제1항</p>
		<p>자. 지하수 수질검사의수리, 시료 채취후 봉인 및 검사결과의 조치</p>	<p>법제20조 령제29조 및 령 제30조제2항, 제 3항 지하수의수질보 전등에관한규칙 제8조</p>
		<p>차. 지하수개발·이용시설에의 출입검사등</p>	<p>법제21조</p>
		<p>카. 타인토지에의 출입허가, 일시 사용 및 장애물 제거 관련허가</p>	<p>법제31조제2항 및 제3항 령제41조</p>

분야별	일련 번호	사 무 명	근 거 법 령
수질관리 과		<p>타. 과태료부과·징수, 의견진술기 회부여 및 이의신청처리(위임된 사무에 한함)</p> <p>하. 지하수개발·이용의 허가 및 변경허가</p> <p>거. 지하수개발·이용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공사착공 및 준공 신고등</p> <p>너. 지하수개발·이용허가의 취소 및 이에 따른 조치</p> <p>더.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</p> <p>러. 지하수개발·이용시공업자 및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대한 감독 및 조사(위임된 사무에 한함)</p>	<p>법제41조 령제44조</p> <p>법제7조 령제8조내지 제 12조</p> <p>법제9조 령제14조</p> <p>법제10조 령제16조</p> <p>법제14조 령제22조</p> <p>법제34조</p>

신구조문대비표

현행				개정			
분야별 번호	일련 번호	사무명	근거법령	분야별 번호	일련 번호	사무명	근거법령
수질 관리과	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하수와 관련된 다음 사항 가.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한 지하수의 개발·이용 및 보전·관리의 조사 등 나. 지하수개발·이용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다. 지하수개발·이용시설의 지정명령 및 조치명령 라. 지하수개발·이용시설의 폐쇄명령 및 당사자 의견 진술기회 부여 마. 지하수개발·이용지역의 원상복구 또는 시설철거명령 및 조치명령, 명령불이행에 대한 대집행 바. 지하수 보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	<p>지하수법제5조제2항 내지 제5항, 동법시행령제2조제3항제3조, 제4조</p> <p>동법제7조 동시행령제6조</p> <p>동법 제8조제1항</p> <p>동법제8조제2항, 동법제20조</p> <p>동법제9조</p> <p>동법제11조 시행령제9조제1항</p>	수질 관리과	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하수와 관련된 다음 사항 가.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한 지하수의 개발·이용 및 보전·관리를 위한 조사 등 나. 지하수개발·이용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다. 지하수개발·이용시설의 지정명령 및 폐쇄명령등 라. 지하수개발·이용지 및 시공입자에 대한 청문 및 의견청취 마. 지하수개발·이용시설에 대한 원상복구명령등 바. 지하수 보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	<p>지하수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제5조, 제2항 내지 제5항</p> <p>동법시행령(이하 "령"이라 한다)제2조 내지 제5조</p> <p>법제8조 령제13조</p> <p>법제11조 령제17조 및 제18조</p> <p>법제35조제1호 내지 제4호 령제42조</p> <p>법제15조제2항 내지 제4항 령제23조 및 제24조</p> <p>법제13조 령제21조</p>